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역균형발전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 임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085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2
IV . 검토의견	3
1. 지역균형발전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안 제15조의2)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임미애의원 등 19인

나. 발 의 일 : 2024. 6. 3.

다. 회 부 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여러 기업과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고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반면, 수도권 외의 지역은 경기 침체와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인하여 지방소멸의 우려가 큰 상황임.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와 불균형으로 인해 지역 간 소득격차가 커지고 있는데도 국가 재정 투입은 수도권에 편중되고 있음. 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소득, 세수, 경제규모 등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를 「국가재정법」에 도입하고, 이와 관련된 현행법상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지역균형발전인지 결산서 및 지역균형발전인지 기금결산서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3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3 신설 등).

Ⅲ.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지역균형발전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안 제15조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지역균형발전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 지역균형발전인지 결산서 제출(예산서 작성·제출 및 결산서 작성은 「국가재정법」에 신설) - 지역균형발전인지 기금결산서 제출(기금운용계획서 작성·제출 및 기금결산서 작성은 「국가재정법」에 신설)

개정안은 지역균형발전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084호)¹⁾의 의결을 전제로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지역균형발전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산의 원칙에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예산 및 기금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국가 예산의 지역별 배분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084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지역균형발전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 예산의 원칙에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항 규정 - 지역균형발전인지 예산서 작성·제출 - 지역균형발전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제출 - 지역균형발전인지 결산서 작성(제출은 「국가회계법」에 신설) - 지역균형발전인지 기금결산서 작성(제출은 「국가회계법」에 신설)

이루어져야 하며, 여러 기업과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등의 상황에서 국가예산이 지역마다 고르게 배분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입법 타당성이 인정되나,

국가예산의 지역별 수혜가 공개될 경우 지역 간에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국가 예산은 지역발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거나 균형발전보다 국가 전체 차원의 우선순위, 지역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많으며, 국가사업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개별사업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지역균형발전인지 예·결산제도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 결과에 따라 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기획재정부는 예산 및 기금은 전체 국가발전 차원의 예산이므로 특정지역을 구분하여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지역균형발전시책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미 별도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운영 중이며, 외국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없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①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은 제외한다) 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야 한다. 1. ~ 7의2. (생략) <u><신설></u> 8. ~ 12. (생략) ②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 2의2. (생략) <u><신설></u> 3. (생략) ③ · ④ (생략) ⑤ 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 결산 서,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른 <u>온실 가스감축인지 결산서</u> ,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 및 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른 <u>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u> 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① ----- ----- ----- ----. 1. ~ 7의2. (현행과 같음) <u>7의3. 지역균형발전인지 결산서</u> 8. ~ 12. (현행과 같음) ② ----- -----. 1. ~ 2의2. (현행과 같음) <u>2의3. 지역균형발전인지 기금결산서</u> 3.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 ----- <u>온실가 스감축인지 결산서</u> , 같은 항 제7호의 3에 따른 <u>지역균형발전인지 결산서</u> ,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 서, 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른 <u>온실가 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u> 및 같은 항 제2호의3에 따른 <u>지역균형발전인지 기금결산서</u> ----- -----.

문의처

02)6788-5153